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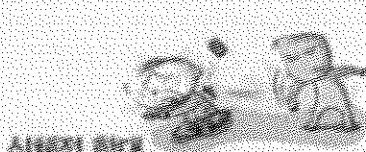
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

노인학대
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행위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연동365요양원

* 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



신체적 학대

신체의 손실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- 위독한 무리질 및 불안전하게 싣음
- 화상, 동상 또는 감염할 수 있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
- 멍, 타박상 및 상처와 관련 있는 발자국 또는 신체상 변화가 보임



정신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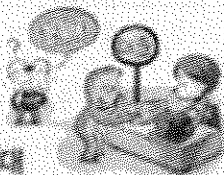
- 무언을 또는 무효한 일 또는 모습
- 폭언, 격언적인 행동 또는 허소시를 부림
- 말이나 행위를 위협하거나 불안전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



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
- 성폭행, 성추행, 부당한 노출시킴
- 성폭력, 강제 성행위, 성매매, 성착취
- 성행위 관련하거나 욕망이 있어짐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
-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
- 노인이 잃어온 돈 또는 물건을 잃지 못함
- 어음통장이 없거나거나 은행계좌의 부속일련 기재가 없음



방임

노인의 의사와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(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)

- 대소변 배설, 청결, 영양, 욕창 등이 방치됨
- 의복 및 약물 관리 방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주거 환경
- 노인 스스로 의사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(자7항참)

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
- 노인을 시설, 병원 등에 입수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방치를 하지 않음

<시설 및 종사자의 노인 학대 및 폭력 예방법>

* 시설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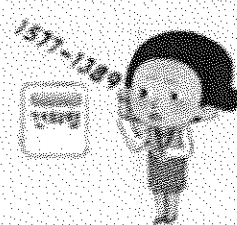
- 학대 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
-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
-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공시
-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 실시

* 시설 종사자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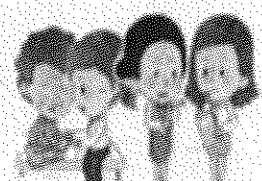
- 동료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
-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 및 해결
-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와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 대한 모색을 위한 개인 및 직원들간의 노력 필요

< 노인 학대사례 대응 방법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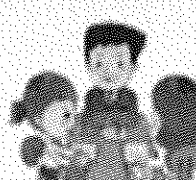
학대사례 발견 및 신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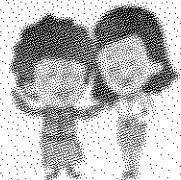
조사와 사정



학대사태에 대한 보호조치



평가와 시후조치



노인학대 신고 전화

1577-1389 또는 129